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성환·김한규

민병덕 • 한준호 • 정진욱

김현정 · 김준형 · 민형배

문대림 • 이수진 • 이연희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,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.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 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 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6조제 1항제7호, 제74조제2항제5호의2).

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

고 있음.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·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62조).

법률 제 호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하지 말 것제62조의 제목 "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)"을 "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)"을 "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

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	제56조(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
사항)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	사항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	
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. 제62</u> 조의3제2항에 따라 인
	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
	이외의 사람에게 환경영향평
	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
	<u>하지 말 것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2조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	제62조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
비용의 산정기준) (생 략)	비용의 산정기준 등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
	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
	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
	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
	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수하
	여야 한다.
제74조(벌칙) ① (생 략)	제74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
에 처한다.	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의2.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
	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
	가 아닌 자에게 환경영향평
	가서등의 자료를 작성하게
	<u>한 자</u>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